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은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3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10.

발의의원 : 김은영 의원,

전홍배 의원, 박주용 의원

1. 제안이유

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중장년 문화여가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달성군립합창단 합창단원의 모집 및 정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합창단원의 자격 및 선발 기준 변경(안 제2조)

나. 합창단원의 정년 기준 완화(안 제6조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“55세 이하의” 를 “60세 미만의” 로 한다.

제6조제3항 본문 중 “58세” 를 “60세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단원의 자격 및 선발) ① 합창단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은 군에 거주하는 25세이상 <u>55세 이하의</u> 자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자로 모집한다. 단, 지휘자,반주자,트레이너 및 솔리스트의 거주지역과 연령은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단원의 자격 및 선발) ① --- ----- ----- <u>60세 미만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단원의 위·해촉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지휘자, 반주자,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제외한 단원의 정년은 <u>58세</u>가 되는 해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</p>	<p>제6조(단원의 위·해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60세</u>----- -----.</p>